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건의사항 회신 및 안내(처리시설의 건축면적 산입 제외 요건)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3183('19.7.29)호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건의사항 관련입니다.
2. 건의 내용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 관련하여 배출시설(축사)의 처리시설(퇴비사)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 경우, 당초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을 적법하게 허가받은 농가에서 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금번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허가받은 처리시설의 건축면적 제외가 가능한지 여부
3. 회신 내용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 중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인 경우에는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배출시설과 관련된 처리시설이라면, 처리시설이 당초 허가여부 및 신규 설치시설인지와 관련없이 모두 건축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위 회신 내용은 각 시도 기초자치단체에 전달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 환경부장관(물환경정책과장), 서울특별시(건축기획과장), 대전광역시(주택정책과장), 대구광역시(건축주택과장), 광주광역시(건축주택과장), 울산광역시(건축주택과장), 강원도지사(건축과장), 경상남도지사(건축주택과장), 경상북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 세종특별자치시(건축과장), 전라남도지사(건축개발과장), 전라북도지사(주택건축과장), 제주특별자치도(건축지적과장), 충청남도지사(건축도시과장), 충청북도지사(건축문화과장), 부산광역시(건축정책과장), 인천광역시(건축계획과장), 경기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

주무관 정인원      시설사무관      성원규      건축정책과      과전결 2019.9.5.  
장      김성호

협조자

시행 건축정책과-6370      접수      축산정책과-3653      (2019. 9. 5.)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정부세종청사6동 418호/      http://www.molit.go.kr  
(어진동)

전화번호 044-201-3757      팩스번호 044-201-5574      / amiableic@molit.go.kr      / 비공개(5)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